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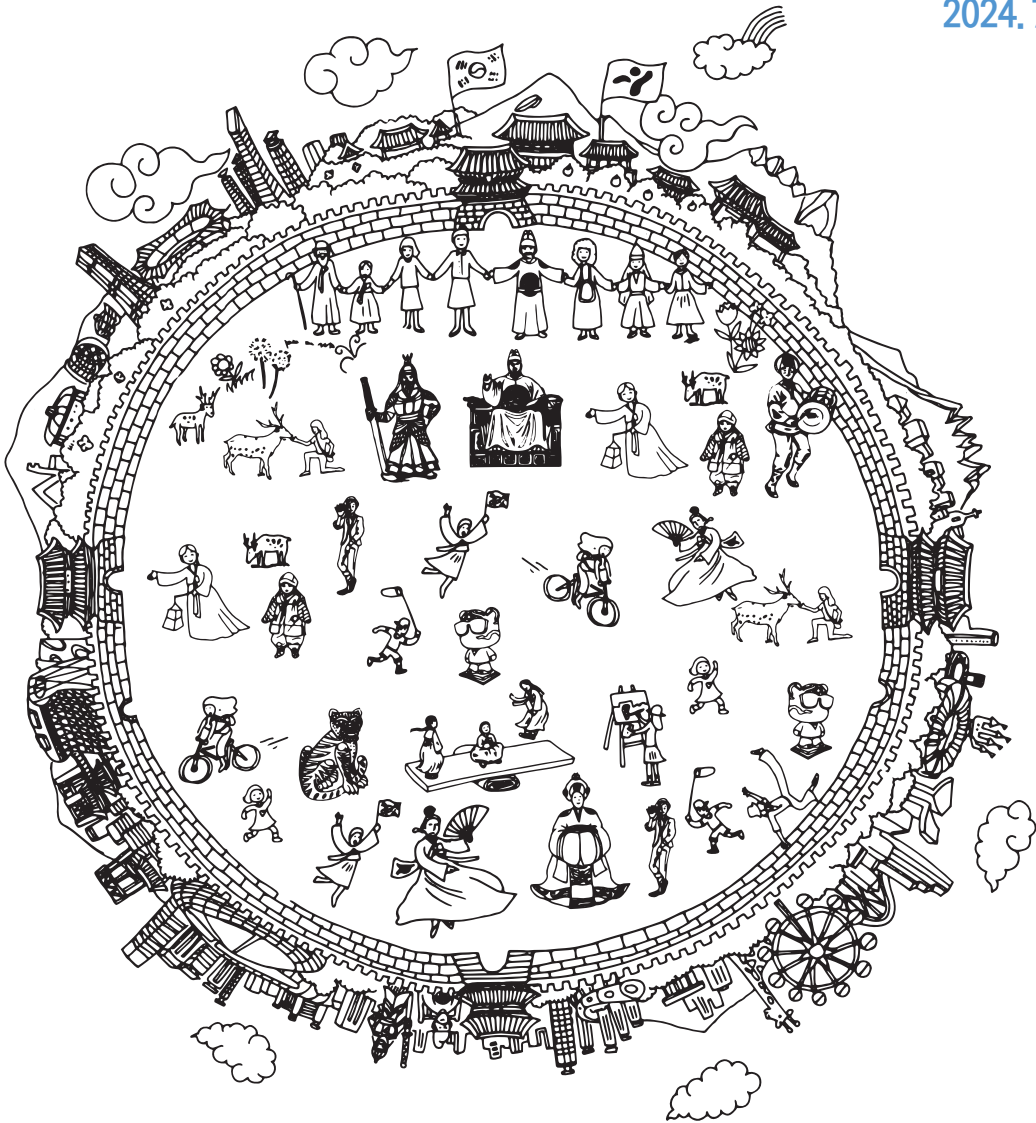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90호
2024. 7. 8.(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292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292호****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 중 “여성가족정책실”을 “여성가족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마목 중 “기술심사담당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미래청년기획단”을 “미래청년기획관”으로 한다.

차. 글로벌도시정책관에 관한 사항

제48조의2제1항 중 “두며”를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두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구성된 상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조직 개편('24.7.1.) 사항을 반영해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 정책지원관의 소관부서를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함

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의 명칭을 여성가족실로 조정함

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술심사담당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조정함

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중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삭제하고, 미래청년기획단의 명칭을 미래청년기획관으로 조정함

마. 정책지원관의 소관부서를 사무처 또는 위원회로 정함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